

제 63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3월 24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3월 24일 상오 11시 2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천철수, 박두순, 이정권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총무과장 장건식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부의안건

- 수입 대맥 현지 도정의 건

◇의장 김 삼 성

-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오늘 갑자기 임시긴급회의를 소집하게된 동기는 수입대맥의 현지 도정을 도당국에 4차에 궁하여 교섭한 경위를 보고함과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목화 거시적으로 현안중인 당시 OEC주재관 사택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 먼저 도당국에 4회나 교섭하였으나 겨우 3,500톤을 배정받아 결국 종전의 실적보다 오히려 불리한 수배량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 본 건에 대하여 과반 농림부당국으로부터 각도지사에 통첩한 지시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는 수입양곡의 도정은 착항지 도정이여야 되는 것이고 타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거개 착항지 도정이 8·9할은 되는 것이나 당시의 실정은 겨우 2·3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 이 문제에 대하여 제 의원의 간격 없는 토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박 찬 대

- 농림부로부터 도지사에게 지시한 통첩사본낭독

◇김 상 대 의원

- 중앙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착항지 도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고 오지로 배정하는 도당국의 처사는 실로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며 의심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당 시의회는 물론이거니와 도의회 측에서도 상당히 진력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적인 작난이 결부되었다고 보아질 때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사태가 이쯤되면 전 시의 명의로 당국에 건의토록 하되, 그래도 안듣는 경우에는 데모라도 일으켜 철저한 투쟁이 긴요하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어떠한 정상배들이 국가정책을 왜곡하고 사리사욕의 작난을 한다면은 목포에서도 이에 상응한 정치적으로 투쟁방법을 세워야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전량 도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남 진 의원

- 우리의회의 의결로써 시장에게 통고하여 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를 기술적인 면에서 토의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다.

◇김 성 균 의원

- 원칙적으로 들어오는 목표의 배정량을 외지에 뺏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도당국의 처사는 분개 아니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경솔히 취급할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하여야 될 줄 믿는 것이니, 의장·부의장·각 상위원장 및 산업 분과위원으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국에 절충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의장 김 삼 성

- 이 문제는 지극히 시급한 문제이나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띄어야 될 것이다. 그리하오니 광주시 배당량은 감할수 없고 도간 배정양곡을 제외하여 단시일내 도정에 착수하는 일방, 건의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다.

◇김 창 희 의원

- 현금당시 성쇠의 관건은 외래선박의 기항이 빈번여부에 있는 것이고 이에 수반한 문제는 OEC주재관 사택문제를 해결하여야 되는 것이다.

- 주재관 사택 구독자금으로 하역회사측에서 백만환, 도정업자 측에서 백만환을 거출한다 하나 나머지 150만환이 문제인 것이다. 이를 해결한 방도는 오직 금반수입된 외래양곡을 당지에서 도정하여야 되는 것이고 중앙의 지시에도 착항지 도정이 원칙인 것이니 금반 수입된 양곡 중 도간 배정량 및 광주시 분을 제외한 2,350톤을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도정에 착수함과 동시에, 이의 교섭은 당시 출신도의원 민의원과 상호호응, 이에 대하도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중앙의 지시는 착항지 도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반하여 도의 처사는 차(此)에 위배된 처사를 한 것이니 도 측과는 손을 떼고 직접 중앙당국에 항의문을 제출함이 가하리라고 보아진다.

◇하 시장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수년 전부터 현안으로 노력하여온 과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려 합니다 마는 과반 도의회에까지 상정하였으나 좌절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상부로부터 즉시 수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으며 시장의 권한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인 것이나, 이에 대한 시의회의 결의라면은 당분간 수송할 것만은 보류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강 영 락 의원

- 시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나 김창희 의원의 동의대로 즉시 도정에 착수하여야 되며 차후 도 당국의 이에 대한 복수가 있다면 그 당시의 실정대로 대처 투쟁토록 결정지어야 할 문제이고, 도리에 부합한 처사이니 정의감에 입각하여 처리하자는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순서에 따라 시장·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중앙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건의토록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첨간한다.

- 동의집 수락

김창희 의원 동의를 표결결과 재석 13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교섭위원으로 산업 분과위원에게 일임할 것을 선언하다.

- 끝이여 산회 선언하다.

(상오 11시 2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3월 25일

시의원 조 양 순

시의원 강 영 락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 63회 임시 긴급 목포시의회 회의상황 보고의 건

(대(對) 3월 24일자 내전(來電)에 의한 회시)

수제(首題)의 건, 당 시의회에서는 작 3월 24일자 임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별지 회의록 사본과 여히(같이) 의결하였기에 자이 보고하나이다.

제 63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3월 24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3월 24일 상오 11시 2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천철수, 박두순, 이정권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총무과장 장건식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부의안건

- 수입 대맥 현지 도정의 건

◇의장 김 삼 성

-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오늘 갑자기 임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게된 동기는 수입대맥의 현지 도정을 도 당국에 4차에 공하여 교섭한 경위를 보고함과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목하 거시적으로 현안중인 당시 OEC주재관 사태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 먼저 도 당국에 4차나 교섭하였으나 겨우 3,500톤을 배정 받아 결국 종전의 실적보다 오히려 불리한 수배량(受配量)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 본 건에 대하여 과반 농림부 당국으로부터 각 도지사에게 통첩한 지시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는 수입양곡의 도정은 원칙적으로 착항지 도정

이어야 되는 것이고 타 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거개 착항지 도정이 8·9할은 되는 것이나 당시의 실정은 2·3할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제의원의 간격 없는 토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서기 박 찬 대

- 농림부로부터 도지사에게 지시한 사본낭독

◇김 상 대 의원

- 중앙의 지시에 착항지 도정을 원칙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고 오지로 배정하는 도 당국의 처사는 실로 원망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창 희 의원

- 현금 당 시 성쇠의 관건은 외래선박의 기항이 빈번하여야 되는 것이고 이에 수반한 문제 OEC주재관 사택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재관 사택 구득자금으로 하역회사측에서 백만원 도정업자 측에서 백만환을 거출한다 하나 나머지 150만환이 문제인 것이다.

- 이를 해결하는 방도는 오직 금반 수입된 외래양곡을 당지에서 도정하여야 만이 되는 것이고 중앙의 지시한 원칙에도 착항지 도정이 원칙인 것이니 금반 수입된 양곡중 도 간 배정양곡 및 광주시분 만을 제외한 분 2,350톤을 지금 시각부터라도 도정에 착수함과 동시, 이 경위에 대하여 중앙청, 도 당국 등에 항의를 제출하고 한편 교섭위원을 파견할 것을 동의하며 그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전폭적인 찬의를 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다.

◇하 시장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수 년전부터 현안으로 노력하여온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려 합니다 마는 도의회에까지 상정되었으나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상부로부터 즉시 수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장의 권한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인 것이나 이에 대한 시의회의 결의라면은 당분간 수송할 것만은 보류하겠습니다.

◇강 영 락 의원

- 시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마는 우리의회로서 최후까지 성사되도록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만약의 경우는 시민대회라도 개최하여 총궐기할 것을 결의하고 김 의원의 동의를 표결토록 하자.

- 김창희 의원 동의 표결결과 재석 13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교섭위원은 산업 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선언하다.

(상오 11시 20분 폐의)